

울산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19가합16112 판결 [주식매수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, 김도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수민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

담당변호사 정인철

변론 종결2020. 6. 24.

판결 선고2020. 10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60,688,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21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고 한다)의 발행주식 총수 50,000주 중 1,590주(3.18%)를 소유한 주주이고,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.

나. C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.

피고	43,860주(87.72%)	대표이사
D	2,350주(4.7%)	피고의 처
E	1,100주(2.2%)	피고의 자
F	1,100주(2.2%)	"
원고	1,590주(3.18%)	

다. 원고는 2016. 4. 19. 피고에게 상법 제260조의251)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그 통지가 2016. 4. 21.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,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이 법원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의 결정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는 원고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지 않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잘못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상법 제360조의25 제4항, 제5항에서는 주식매매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, 법원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에서는 상법 제335조의52)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 제4항3)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.

그런데,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, 피고가 원고의 주식매수 청구에 대하여 협의는커녕 매수청구권 자체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, 이 사건 소를 오로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비송사건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 C의 지배주주인 피고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고(상법 제360조의25 제1항), 피고는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(상법 제360조의25 제1항),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460,688,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먼저, 피고가 C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.

- 1)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로 규정하고 있다.
- 2)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C의 주주는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다. 그런데, 을 제6호증의 1 내지 4,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의 자녀인 E와 F이 2013. 11. 28. 조모인 G으로부터 각 1억 원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, 2013. 11. 29. H으로부터 주식 1,100주를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, 2014. 2. 26. 위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E와 F 명의의 위 주식(4.4%)을 피고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볼 수는 없다.
- 3)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지배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용두

판사항인아

판사이승민

- 1) 제360조의25 (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)

-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.
-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

2) 제335조의5 (매도가액의 결정)

-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.
- ②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제335조의4 (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)

-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.

3) 제374조의2 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

-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<개정 2001.7.24., 2015.12.1.>